



자주 묻는 질문-지방세

(I) 토지가격세(地價稅)

1. 질문: 토지가격세는 언제부터 납부하나?

답변: 토지가격세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.

2. 질문: 자가소유주택용지란 무엇인가?

답변: 자가소유주택용지란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, 직계존속이 해당 지역에서 호적등록을 마치고 임대를 했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주택용지를 말한다.

3. 질문: 자가소유주택용지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, 당해기간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세를 과세하는 신청기간은 언제인가?

답변: 토지소유권자는 늦어도 매년 9월 2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신청기간 경과 시 신청일 이듬해부터 적용된다.

4. 질문: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을 적용한 토지가격세 과세 신청이 가능한 토지의 조건은 무엇인가?

답변: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을 적용한 토지가격세로 과세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.

- (1)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, 직계존속이 해당 지역에서 호적등록을 완료함
- (2) 임대를 했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
- (3) 도시토지면적이 3아르(300m²)를 초과하지 않음. 비도시토지면적이 7아르(700m²)를 초과하지 않음.
- (4) 지상 건축개량물이 토지소유권자 또는 그 배우자, 직계존속 소유임
- (5) 토지소유권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부양가족의 자가소유주택용지가 한 곳 뿐임

5. 질문: 토지가격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은 얼마인가?

답변: 토지가격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은 2%이다.

6. 질문: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을신청해서 토지가격세를 과세할 시,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?

답변: 건축개량물 증명서류와 해당 지역에서 발급 받은 외국인거류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.



자주 묻는 질문-지방세

(II)토지부가가치세

1. 질문: 토지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하나?

답변: 이미 토지가격이 정해진 토지는 토지소유권 이전 시 토지 인상가 총액에 따라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.

2. 질문: 토지부가가치세 자가소유주택용지의 세율은 얼마인가?

답변: 토지이전 시 자가소유주택용지 요건에 맞을 경우, 토지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%이다.

3. 질문: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로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면적 제한이 있는가?

답변: 토지소유권자가 '생애 최초'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을 신청하여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시, 그 면적제한은 도시토지는 3아르(300m²)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도시토지는 7아르(700m²)를 초과하지 않는다. '생애 1주택'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을 신청하여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시, 그 면적제한은 도시토지는 1.5아르(150m²)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도시토지는 3.5아르(350m²)를 초과하지 않는다.

4. 질문: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'생애 최초 자가소유주택용지 세율'로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?

답변: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매각 전 1년 동안 타이완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거류등록을 마쳤고 그 매각하는 토지가 자가소유주택용지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, '생애 최초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'로 토지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.

5. 질문: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을 적용한 토지부가가치세 과세를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? 어떻게 신청하나?

답변: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토지 소재지의 세금분처(稅捐分處)에 토지이전 현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을 적용한 토지부가가치세 과세 신청을 원할 경우, 토지이전 현가액 신고서에 '자가소유주택용지세율 적용 과세'를 체크하고 계약서, 외국인거류등록증,여권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.

(III)주택세

1. 질문: 주택세는 언제부터 납부하나? 과세기간은 언제인가?



자주 묻는 질문-지방세

답변: 주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납부한다. 과세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이다.

2. 질문: 타이베이시 주택세 세율은 얼마인가?

답변: 주택세 세율은 주택의 실사용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.

- (1)자가거주자 또는 공익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 시: 주택 현가의 1.2% 과세
- (2)기타 주거용으로 사용 시: 보유가구수가 2가구 이하인 경우 가구당 주택 현가의 2.4% 과세, 3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 가구당 주택 현가의 3.6% 과세
- (3)영업, 개인병원, 진료소, 프리랜서 사무실로 사용 시: 주택 현가의 3% 과세
- (4)인민단체 등 비주거 및 비영업용으로 사용 시: 주택 현가의 2% 과세
- (5)주택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동시 사용 시: 실사용면적에 따라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세율로 각각 과세해야 한다. 단, 비주거용일 경우 과세면적이 전체면적의 1/6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.

3. 질문: 연도내 주택사용상황이 변경될 경우 주택세를 어떻게 과세하나? 과세종목을 어떻게 변경하나?

답변: 주택세는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사용 상황이나 보유가구수에 변동이 발생할 시 30일 이내에 전화, 팩스 또는 신청서 제출 등 방식으로 주택 소재지 세금분처에 과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. 변경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며, 변경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에 변경된 세율이 적용된다.

(IV) 취득세

1. 질문: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?

답변: 주택 매매, 저당, 교환, 증여, 분할 또는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,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.

2. 질문: 취득세 세율은 얼마인가?

답변: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
- (1)매매취득세는 계약가액의 6%
- (2)전권(典權)취득세는 계약가액의 4%



자주 묻는 질문-지방세

- (3)교환취득세는 계약가액의 2%
- (4)증여취득세는 계약가액의 6%
- (5)분할취득세는 계약가액의 2%
- (6)점유취득세는 계약가액의 6%

3. 질문: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?

답변: 주택을 취득한 신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.

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을 이전할 시, 신소유자는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 소재지 세무분처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.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이전할 시, 신소유자와 원소유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.

(V)자동차면허세

1. 질문: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면허세는 매년 언제 납부하나?

답변: 자가용 자동차 및 151cc(151cc포함)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면허세는 매년 1회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. 영업용 자동차는 상, 하반기 2차례 납부하며 상반기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,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.

2. 질문: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여 징수하나?

답변: 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모터의 최대마력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자동차면허세법의 자동차분류세액표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.

3. 질문: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자동차면허세 감면 혜택이 있나?

답변: 장애인수첩이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전면허가 있는 자가 사용하고 해당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자동차면허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심신장애로 인해 운전면허가 없으나 본인,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의 2촌 등 이내의 친족이 소유하고 해당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자동차면허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. 단 총배기량이 2,400cc를 초과하거나 완전히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모터의 최대마력이 262HP 또는 265.9PS를 초과하는 경우, 2,400cc, 262HP 또는 265.9PS 차량의 세액에 한해서만 면제되며 초과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.



자주 묻는 질문-지방세

(VI) 인지세

1. 질문: 인지세의 과세범위는?

답변: (1)금전영수증: 금전 수령 후 발급하는증표

(2)동산매매계약증서: 동산 매매 시 발급한 증서

(3)수주계약증서: 일방이 다른 일방을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, 업무가 완수되면 다른 일방이 지급하는 보수의 증서

(4)부동산 전매(典賣: 장차 원가로 되산다는 조건을 붙여 파는 일), 양수 및 분할 계약증서: 부동산 전권(典權)설정 및 매매, 교환, 증여, 분할 후 발급한 것으로 지정(地政)기관에 물권등기 신청 시 사용하는 계약증서

2. 질문: 인지세는 어떻게 과세하나?

답변: (1)금전영수증: 건당 금액의 4%의 인지 부착

(2)동산매매계약증서: 건당 NT\$12의 인지 부착

(3)수주계약증서: 건당 금액의 1%의 인지 부착

(4)부동산 전매(典賣), 양수 및 분할 계약증서: 건당 금액의 1%의 인지 부착

3. 질문: 인지세는 언제 납부하나?

답변: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표를 발급받은 후 교부 또는 사용 시인지를 부착해야 한다.

4. 질문: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?

답변: 증표를 발급하는 계약자가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매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증표에 부착하여 규정에 따라 소인을 찍는다. 금액이 방대해서 인지를 부착할 수 없다면, 가까운 지방의 세금징수기관에 인지세납부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에 납부 후 납세한 납부서를 증표에 부착하면 된다.



자주 묻는 질문-지방세

(VII) 타이베이시 세금징수처 및 각 분처(分處)전화번호, 팩스번호, 주소 및 이메일

주소

기관명	전화번호	팩스번호	주소 이메일주소
총처(總處)	2394-9211 6632-7979	2351-4382	10051 臺北市中正區北平東路7之2號 d03010990@mail.taipei.gov.tw
중정(中正)분처	2393-9386 6630-0101	2393-0994	10051 臺北市中正區北平東路7之2號1樓 d03010110@mail.taipei.gov.tw
다통(大同)분처	2587-3650 6619-5511	2593-0103	10363 臺北市大同區昌吉街57號3樓之2 d03010120@mail.taipei.gov.tw
중산분처	2503-9221 6608-5252	2501-3265	10402 臺北市中山區松江路367號3樓 d03010070@mail.taipei.gov.tw
완화(萬華)분처	2302-1191 6632-9292	2336-7245	10855 臺北市萬華區和平西路3段120號6樓 d03010150@mail.taipei.gov.tw
신이(信義)분처	2723-5067 6639-9922	2722-3867	11049 臺北市信義區信義路5段15號3樓 d03010090@mail.taipei.gov.tw
쑹산(松山)분처	2570-3911 6601-2727	2577-9893	10555 臺北市松山區八德路3段178號3樓 d03010080@mail.taipei.gov.tw
주타이베이 감리소 (자동차면허세)	2753-4416	2767-9278	10561 臺北市松山區八德路4段21號3樓 d03010990@mail.taipei.gov.tw
난강(南港)분처	2783-4254 6616-0202	2782-3099	11579 臺北市南港區南港路1段360號3樓 d03010170@mail.taipei.gov.tw
원산(文山)분처	2234-3518 6629-8585	2234-3519	11606 臺北市文山區木柵路3段220號4樓 d03010160@mail.taipei.gov.tw
다안(大安)분처	2358-1770 6630-0055	2341-2589	10650 臺北市大安區新生南路2段86號3樓 d03010100@mail.taipei.gov.tw
스린(士林)분처	2831-8101 6611-0909	2831-8106	11160 臺北市士林區美崙街41號 d03010130@mail.taipei.gov.tw
주타이베이 감리소 스린(士林)감리장 (자동차면허세)	2831-5444	8866-3255	11169 臺北市士林區承德路5段80號2樓 d03010990@mail.taipei.gov.tw
베이투우(北投)분처	2895-1341 6610-9797	2895-2132	11230 臺北市北投區新市街30號3樓 d03010140@mail.taipei.gov.tw
나이후(內湖)분처	2792-2059 6601-5353	2791-8544	11466 臺北市內湖區民權東路6段99號2樓 d03010180@mail.taipei.gov.tw

◎지방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금징수처 각 분처에 문의할 수 있다.